

부산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3383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흥대, 김경덕, 김예은, 최윤석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지현

변 론 종 결 2021. 1. 26.

판 결 선 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24. 체결된
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지소 2018. 7. 25. 접수 제194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

(1) C과 D은 15세대의 'E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할 목적으로 2016. 4. 1. 부산 중구 F 대 188.4㎡(이하 '이 사건 빌라부지'라 함)를 매수하여 빌라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2017. 6. 27. C과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7. 9. 8.자로 원고는 C에게 경남 고성군 G 답 3,91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소유권을 넘기고, 그와 동시에 C은 이 사건 빌라 중 H호, I호, J호 3개 세대(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9., 10., 11. 기재 각 부동산, 이하 '교환계약빌라'라 함)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 이후의 경과

(1) C은 2017. 7.초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이 모자라다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교환계약빌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과 별도의 특약사항(갑제1호증의 2)을 정하고, 2017. 7. 4. C측의 대리인인 K와 L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되 2017. 8. 31.까지 원고에게 토지대금으로 합계 5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7. 7. 6.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한편,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명의로 된 가등기를 마쳐두었다.

(2) C은 2017. 7. 6.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M조합, 채무자 K,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M조합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는 한편 신용대출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C은 약속과 달리 준공검사의 지연 등을 핑계로 원고에게 교환계약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의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C을 대신해 대출이자, 법무사 비용 등을 변제하는 한편, C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였다. 이에 C은 2017. 11. 25. K와 N(C의 실사주)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2018. 1.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해 주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갑제6호증)를 작성해주었고,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될 경우 그 액수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이자, 법무사 비용 등을 합하여 4억 1,6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속하였다.

(4) C은 위 (3)항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8.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을 원고의 남편 O 앞으로 되돌려주었고, 2018. 8. 1.에는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P 대 510.1㎡(이하 'P토지'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8. 11. 12.에는 원고에게 채무자 C, 연대보증인 N, L, K로 하여 4억 1,600만 원을 2019.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5) C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원리금을 갚지 않자,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절차에 돌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7. 29. 경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K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경로

(1) 1차신탁계약

(가) C과 D은 이 사건 사업의 공정율이 39%인 상태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Q조합(이하 'Q'이라 함)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되,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빌라부지를 피고에게 담보신탁하고, 차후 이 사건 빌라부지에 빌라가 신축되면 빌라도 추가로 피고에게 신탁등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신탁약정'이라 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29. C 및 D과 이 사건 빌라부지 및 차후 신축된 빌라도 추가로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1차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다음, 수익자인 Q에 13억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Q은 같은 날 C과 10억 원을 한도로 한 대출거래약정서와 추후 신축될 빌라에 대해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빌라부지에 관해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1. 29. 접수 제36720호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Q은 신탁등기를 마친 후 수익권증서 및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2016. 11. 29. 5억 2,6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공정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였다. C과 D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다며 Q에 추가로 2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요구하며 한도거래변경을 요구하였다. Q은 2017. 7. 21.에 C과 한도거래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Q에 15억 8,6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2) 2차신탁계약

(가) 이 사건 빌라는 2018. 2.경 완공되었는데, C은 2018. 7. 25.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9. 7. 24.자 신탁(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함)을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과 D은 피고 및 Q과 차후 이 사건 빌라부지에 빌라가 신축되면 추가로 신탁등기를 하여 Q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1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빌라를 피고 및 우선수익자인 Q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추가로 신탁등기를 마쳐주고자 했으나, 이 사건 빌라부지에 대해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이 사건 빌라를 위한 대지권을 부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18. 7. 25.에 2018. 7. 2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이 사건 빌라부지에 대해 마쳐두었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빌라에 대지권을 부여한 뒤, 그날 대지권이 부여된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C과 D 및 피고 간에 신탁계약(이하 '2차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것으로 하고 2018. 7. 24.자 신탁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19416호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빌라가 부동산경기 불황의 여파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대금, 취득세 등이 부족하게 되자 Q에 대출한도금액 1억 2,000만 원의 추가대출을 요구하였다. Q은 2018. 7. 25. C과 대출한도금액을 1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Q에 17억 4,2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원고는 2019.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382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5.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4억 1,6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데, 위 채권의 발생일은 C이 N, L, K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원고 부부에게 써 준 공정증서(갑제7호증)의 작성일인 2017. 7. 6.이다.

C이 2018. 7. 24. 피고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고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5.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은 이 사건 빌라 외에 울산 울주군 P 대 510.1㎡ 및 그 지상건물(15세대의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집합건물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압류를 감안하면 재산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8. 7. 25. 접수 제1941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내용

원고는 2018. 8. 1. C에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C회사 P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정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행위도 있었다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1차신탁계약의 특약사항 8조에는 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 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한 점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3호증의 1, 3,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1. 21.자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업부지,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규모, 공정율이 적시되어 있는 점, 수익자인
Q이 대출을 실행할 당시 C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1차신탁계약 시 향후 건축될 이 사건 빌라의 종류나 명칭이 특정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1차신탁계약 시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등 신탁계약의 내용도

동일하게 2차신탁계약에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2차신탁계약은 향후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 빌라를 추가로 담보신탁하겠다는 1차신탁계약 약정을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차신탁계약과 2차신탁계약은 동일한 법률행위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1차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성립한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의사에 관하여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Q은 1978. 2. 4.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금융여수산업 등을 하고 있는 R조합으로 C이 이 사건 빌라 건축자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요구해 대출을 실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C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점, 금융업을 하는 Q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위 신탁계약을 체결할리는 없을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제12호증의 1내지 6,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Q이 대출금을 집행할 때 C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사업 자금 용도로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지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Q은 1차 및 2차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원고의 피보전권리 및 수익자인 Q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월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월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7.3476

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4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6.8921

3.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2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7.3476

4.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7.4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6.8921

5.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1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17,3414

6.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2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7.0803

7.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2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7.0803

8.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8.21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7.0903

9.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7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20.9914

10.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8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20.9914

11.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9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3.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20.9914

12.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철근콘크리트)10층 공동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제1종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29.15㎡

1층 125.46㎡

2층 84.625㎡

3층 84.625㎡

4층 122.1㎡

5층 122.1㎡

6층 122.1㎡

7층 105.23㎡

8층 105.23㎡

9층 105.23㎡

10층 121.34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0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0.2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중구

대 188.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188.4분의 20.1430-이 상 -